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683 손해배상(저)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주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가소303196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2.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25. 9. 10.부터'를 '2025. 5. 8.부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항소취지도 이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캐릭터 상품 제작 및 라이선싱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컵케이크 등을 주문제작·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캐릭터 제작 및 저작권 등록

원고는 3D 애니메이션을 개발하면서, 등장캐릭터의 이미지로 아래와 같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등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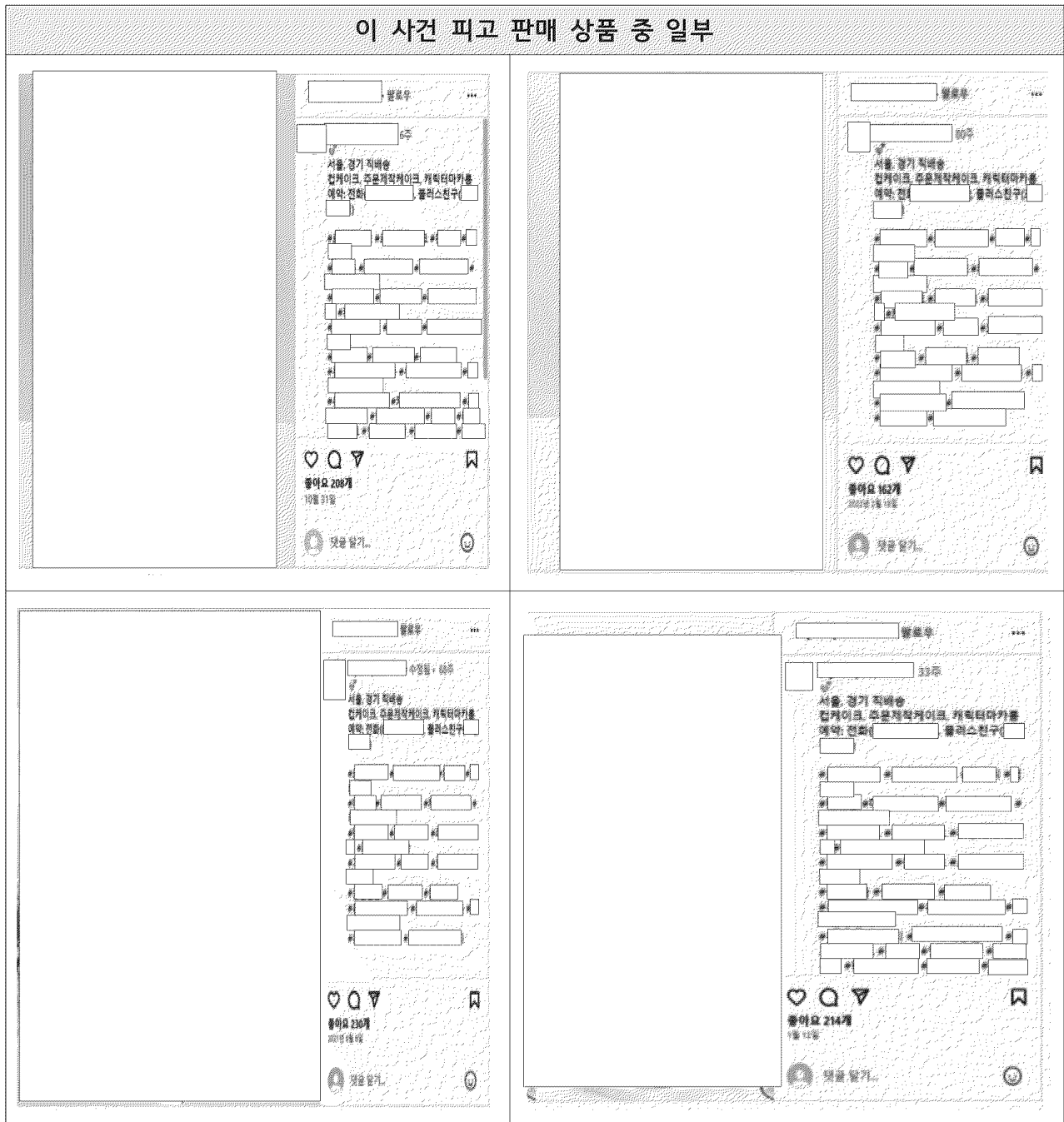
이 사건 각 저작물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저작물 이용 행위

피고는 2021. 9. 6.경부터 2023. 11. 29.경까지 피고의 SNS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복제 이미지를 포함한 마카롱, 컵케이크 등(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공중송신·판매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3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이



미지가 포함된 이 사건 상품을 공중송신·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구 저작권법(2026. 2. 10. 법률 제21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4항],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저작물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정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침해된 원고의 저작물이 22개인 점, ② 이 사건 상품 판매기간이 약 2년 2개월로 다소 장기인 점, ③ 피고가 적극적으로 'Z' 등으로 이 사건 상품을 홍보한 점, ④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상품의 수량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데, 피고가 1인 자영업자이고, 주문제작 판매상품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상품의 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추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⑥ 이 사건 상품의 종류, 제작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당 순이익이 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의 행위태양 및 이 사건에 드러난 주관적 인식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7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5.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0. 2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25. 9. 10.부터'는 '2025. 5. 8.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영희

판사 정인재

판사 김기현